국토교통부	보 도 참 고 자 료	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배포 일시	2023. 3. 2.(목)			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성훈 (044-201-3549)
		담당자	사무관	장미선 (044-201-3555)
	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	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팀 장	홍 철 (044-201-4990)
			사무관	김병철 (044-201-3521)
보도일시	2023년 **3월 2일(목) 10:00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얼레비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, 운전대 못 잡는다

- 국토부,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정지 처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-

□ 앞으로 **건설기계**를 활용한 **부당금품 수수**, **공사방해**, **태업** 등의 **불법·부당행위**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의 **건설기계 조종사**는 **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**된다.

□ **국토교통부**(장관 원희룡, 이하 국토부)는 지난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**건설현장 불법·부당행위 근절대책**」의 일환으로, **3월**부터 본격 **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·부당행위**에 대한 **면허정지 처분**이 이뤄질 수 있도록 **가이드라인을 마련**했다고 밝혔다.

○ 현행 「**국가기술자격법**」은 타워크레인 등 **건설기계*** **운전 자격 취득자**(조종사)가 ①**성실히 업무** 하지 않거나 **품위를 손상**시켜 ②**공익**을 해치거나 **타인에 손해**를 입힌 경우, 국토부가 **자격(면허******) 취소** 또는 **일정기간 자격(면허) 정지**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
* 타워크레인, 굴삭기, 기중기, 지게차, 롤러, 불도저 등

**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취소/정지된 경우, 면허도 취소/정지 가능 (건설기계관리법)

○ 국토부는 조종사의 불법·부당행위에 **엄정 대응**하기 위해 **법원 확정판결* 없이도 행정처분에 착수**할 수 있도록 유형별 **처분근거·증빙자료·사례**, **처분수준** 및 **처분절차** 등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였고, 조종사는 위반 횟수 등에 따라 **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**된다.

* 금고 이상의 형(자격취소에 해당), 벌금 이하의 형(자격정지 2년에 해당) (근거: 국가기술자격법)

□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**불법·부당행위 유형**은 크게 ①**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**, ②**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**, ③**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**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.

○ 첫째, **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**한 행위는 **품위손상**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, 금품 제공자에게 **금전적 손해**를 발생시킨 것으로,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**면허정지를 처분**한다.

○ 둘째, **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**는 **국가기술자격을 부정한 목적**에 활용하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**품위손상**에 해당하며, 공사 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야기하는 처분 대상이다.

○ 셋째, **월례비 지급중단** 등을 이유로 한 **부당한 태업** 등은 국가기술자격자로서 **성실히 근무를 수행할 의무를 위반**한 것으로 **건설현장 질서를 훼손**하는 행위에 해당된다.

- **정당한 절차**를 거치지 않은 태업은 **불법**이며, 작업효율을 고의로 감소시켜 사용자를 압박하고 사용자, 관리자의 **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**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.

- 따라서, **급박한 위험상황**이 아님에도 안전수칙의 세부조항 위반 등을 이유로 **조종사가** 안전관리자 등과 상의 없이 **일방적인 판단하에 작업을 전면 거부**하는 행위도 성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.

□ **국가기술자격 처분수준**은 불법·부당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하여 **1차 위반** 시에는 **자격정지 3개월**, **2차 위반** 시에는 **자격정지 6개월**, **3차 이상 위반** 시에는 **자격정지 12개월**을 처분한다.

○ **처분절차**는 ①신고 접수 → ②처분요건 해당여부 파악 및 **증빙서류 확보** → ③**현장조사**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확인서 징구(필요시 경찰 협조) → ④**행정처분 심의위원회*** 개최 → ⑤**청문** → ⑥**처분 및 관계기관 통보** 순이며,

* 건설기계 전문가, 노무사, 변호사 등 3~5인으로 구성

○ 최종적으로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**시·군·구청**에서 **면허정지 처분**을 할 수 있도록 **국가기술자격 처분결과**를 **시·군·구청에 공유**할 계획이다.

□ 동 가이드라인은 **3월 1일 이후**에 발생한 **조종사의 부당행위**에 적용되며, **국토부**는 부당행위를 **신고받는 즉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**하고, 면허 정지에 이르기까지 **신속하게 절차를 진행**할 계획이다.

○ 또한, 건설기계 조종사가 **부당금품을 요구**하는 경우 **면허취소도 가능**하도록 **「건설기계관리법」 개정**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**원희룡 국토부 장관**은 "**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**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, 공기를 연장시키는 한편, **분양가 상승**으로 이어져 결국 **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**되고 있는 실정"이라면서,

○ "이번 **가이드라인 마련**을 계기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**뿌리깊은 불법행위와 악성 관행**을 바로잡겠다"는 의지를 밝혔다.

□ 아울러, 원 장관은 "**행정처분에 착수**하기 위해서는 **현장 피해에 대한 인지가 중요**한 만큼, **건설업체**가 **노조의 겁박과 횡포**에 물러서지 말고 **신고에 적극 나서달라**"고 당부하였다.

※ 피해 신고는 국토교통부(☎1577-8221) 또는 경찰청(112)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